

# 긴급 입찰 공고 사유서

- 입찰건명 :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
- 계약기간 : 계약체결일 ~ 2025.11.21.
- 입찰방법 : 긴급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
- 관련근거

## 1)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(입찰공고의 시기)

<p>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(입찰공고의 시기)</p> <p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</li><li>1의2.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</li><li>2.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</li><li>3.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</li><li>4.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</li></ol> <p>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li><li>2.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</li></ol>
---

## 2)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

- '25.6.30.까지 모든 경쟁입찰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1의2호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 가능

## □ 긴급입찰공고 사유

- 본 조사는 3개의 조사(수급자, 기관, 요원)가 하나의 조사로 진행되므로, 조사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  - 그러나 본 연구 진행기간은 11월 30일로 연구기간 내에 조사 완료를 위해서는 조사업체와의 빠른 계약을 통한 조사준비 필요
  - 또한, 표본설계 등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자료 구득을 위해서는 표본설계가 우선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며, 표본설계는 외부위탁업체의 과업 중 하나로 연구의 빠른 수행을 위해 조사업체 선정 시급
- 용역사업 계약기간 내 과업 완수를 위해서는 신속한 조사 추진이 필요하므로 긴급 입찰공고를 통해 조사업체 선정 기간을 단축하고자 함.